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16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56,150원, 농어촌특별세 905,610원, 등록세 4,528,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가. 원고는 2010. 10. 21. [redacted] B아파트 제[redacted]동 제[redacte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유아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기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31.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0. 11. 18.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인가 받았으며, 2012. 6. 12. 원고의 남편인 D을 대표자로 변경인가 받았으나, 시설장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012. 6. 12.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의해 취득세 9,056,160원, 농어촌특별세 905,610원, 등록세 4,528,070원의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포함),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추징요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증여하거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만 D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추징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1] 제178조 제2호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자가 반드시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거나 그 운영자로서 보육시설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혜택을 주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어린

1)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구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취득세 등의 추징과 관련된 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제94조, 2014. 1. 1.부터는 제178조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이집의 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아래 신설된 조항 등을 근거로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조, 제3조), 2010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신설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2] 그리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업의 특성,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인가와 보육시설의 장에 관하여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

2) 2014. 1. 1. 위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의 신설 이후에도 임대방식의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조문(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 다수 존재한다(위 법률 제21조, 제23조, 제40조,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등). 위와 같이 위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의 신설 이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감면목적에 따라 임대용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위 정의규정의 문언이나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가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것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검토

㈎ 우선 피고는 앞서 본 신설규정에 근거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만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 갑 6~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할 직무를 가진 자를 말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원고는 2008. 7. 3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2. 6. 12.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에서 시설장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 받았고, 실제로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고도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③ 2012. 6.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된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부터 수익 또는 급여 등 어떠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1.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태양아이엔티에서 E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0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2005.12.31, 2007.12.31, 2010.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